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7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7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경로당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및 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추가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-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- 경로당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추가(안 제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)
-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경로당 지도·감독 사항을 추가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-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추가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 -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신설
-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 -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: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위촉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
- 경로당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추가(안 제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)
 -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
 - 사행성, 영리행위, 회원 간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
-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 신설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과 업무 등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, 지역봉사지도원 제도의 운영상에 보다 다양한 출신의 노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경로당 지도감독은 공공의 책임성을 견지하기 위해 집행하는 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볼 수 있음.

다만, 해당 부서는 경로당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치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, 시설폐쇄가 가져올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행정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한 신중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